

위 레 선 도 시 철 도 건 설 사 업
환 경 영 향 평 가
[평가항목 · 범위 등의 결정내용]

2021. 10



서 울 특 별 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목 차

제 1 장 사업의 개요	1
제 2 장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6
제 3 장 주민 등에 대한 의견 수렴계획	15
제 4 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19

제1장 사업의 개요

1.1 사업의 배경

- 위례 택지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 대책(국토교통부)에 따른 내부 신교통수단으로 계획
 - 대중교통 중심 친환경 도시개발과 관광자원화 등을 위해 택지개발 사업지구 지정 제안시부터 신교통 수단 도입을 계획
- 2008년 3월 위례신도시 택지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신교통수단으로 반영된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은 2014년 5월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안 확정(국토교통부)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2015년 11월 PIMAC의 민자 적격성 조사결과 타당성 부족으로 검토
- 추후, 기존의 타당성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업비 최소화, 노선변경 등의 사업계획 변경의 타당성 재검토 및 조속한 사업의 재추진을 위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별도 추진한 “위례신도시 신교통수단(위례선) 사업계획 재수립 연구용역, 2019” 수행
- 공공주도사업 전환('18.06, 국토교통부)에 따라 관계기관 협약 체결('19.05)

1.2 사업의 목적

- 본 위례선 도시철도(노면전차) 건설사업은 대규모 개발지인 위례신도시의 교통난 해소 및 대중교통 편의성 증진을 위함.
 -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위례신도시 입주민의 기존 도시철도 접근성을 고려한 대중교통체계 구축과 도시철도, 버스 간 환승시스템 구축을 통한 거주민의 서울 도심 접근성 향상 도모
 - 환경친화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첨단 신교통 서비스 수단의 도입과 위례 트랜짓몰에 어울리는 노면전차 컨셉 구상 및 스마트시티 기술요소 적용, 자율주행 접목 등의 검토를 통한 위례신도시 활성화 및 도시 경쟁력 향상 도모

1.3 사업의 내용

- 사업명 :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사업
- 사업구간
 - 기점 :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역(5호선)
 - 종점 : 서울특별시 송파구 복정역(8호선, 분당선)·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남위례역(지선)

◦ 사업규모

- 연 장 : 총 5.4km(본선 4.679km, 지선 0.717km)
- 정 거 장 : 총 12개소(본선 10개소(환승 3개소), 지선 2개소(환승 1개소))
- 차량기지 : 1개소(위례신도시 공원부지 지하구간, 21,557 m²)
- 입출고선 : 0.261km



- 사업비 : 2,614.4억원(보상비 제외)
- 사업기간 : 2019년 ~ 2025년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 승인기관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그림 1-1>

사업노선 위치도

1.3 사업의 추진경위 및 계획

가. 추진경위

- 2008. 03. :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위례선 포함(국토교통부)
- 2011. 06. : 위례신도시 연계철도 타당성 조사 완료(서울특별시)
- 2013. 07. : 「서울시 도시철도 종합발전방안」 위례선 포함, 남위례역 지선 제외
- 2014. 05. :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남위례역 지선 포함
- 2015. 06. :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국토부 승인
- 2015. 11. : 위례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 의뢰(타당성 미확보)
- 2018. 06. : 공공주도사업 추진 합의(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 2018. 12. : 「2차 수도권 주택 공급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 국토교통부」
⇨ 타당성 조사 비대상 결정
- 2019. 05. :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노면전차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체결
⇨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경기도, 송파구, 성남시, LH, SH
- 2019. 07. : 중앙투자심사 완료
- 2019. 08. :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제외 요청에 대한 회신
: (환경부⇨서울특별시)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 가능
- 2020. 04. : 관계기관 사전협의, 주민공청회 개최, 시의회 의견 청취
- 2020. 11. :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사업 기본계획 승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고시 제2020-7호)
- 2021. 06. :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
- 2021. 09.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평가준비서 심의 개최

나. 추진계획

- 2021. 10. :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14일 이상)
- 2021. 10.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제출
- 2021. 10. ~ 11.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 2022. 01. : 환경영향평가서(본안) 제출

1.4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 본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별표3]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및 협의요청시기” 중 「7.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의 건설」 중 도시철도 길이가 4.0km이상의 신설에 해당되어 사업계획 승인 전에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를 실시

<표 1-1>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구 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협의 요청시기
7.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사업	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 및 도시철도시설의 건설사업 중 길이가 4킬로미터 이상이거나 도시철도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도시철도법」 제7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
본 사업	◦ 총연장: 5.4km	사업계획 승인 전

제2장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2.1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본 사업의 대상지역 설정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2018. 12.12,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평가범위 설정 가이드라인(대기질, 악취, 소음·진동), 2013.01, 환경부」 및 「환경친화적 철도건설 지침, 2015.08, 환경부·국토교통부」 등 을 참조하여 선정하였음.
- 환경기준의 적정성 유지 및 자연환경의 보전이 가능한 노선을 계획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은 사업노선으로 인한 환경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주변 지역의 제반 환경상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정성적으로 파악·분석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업의 공간적, 시간적 범위를 설정한 후 주요 항목별 대상지역을 설정하였음.

2.2 평가항목별 대상지역의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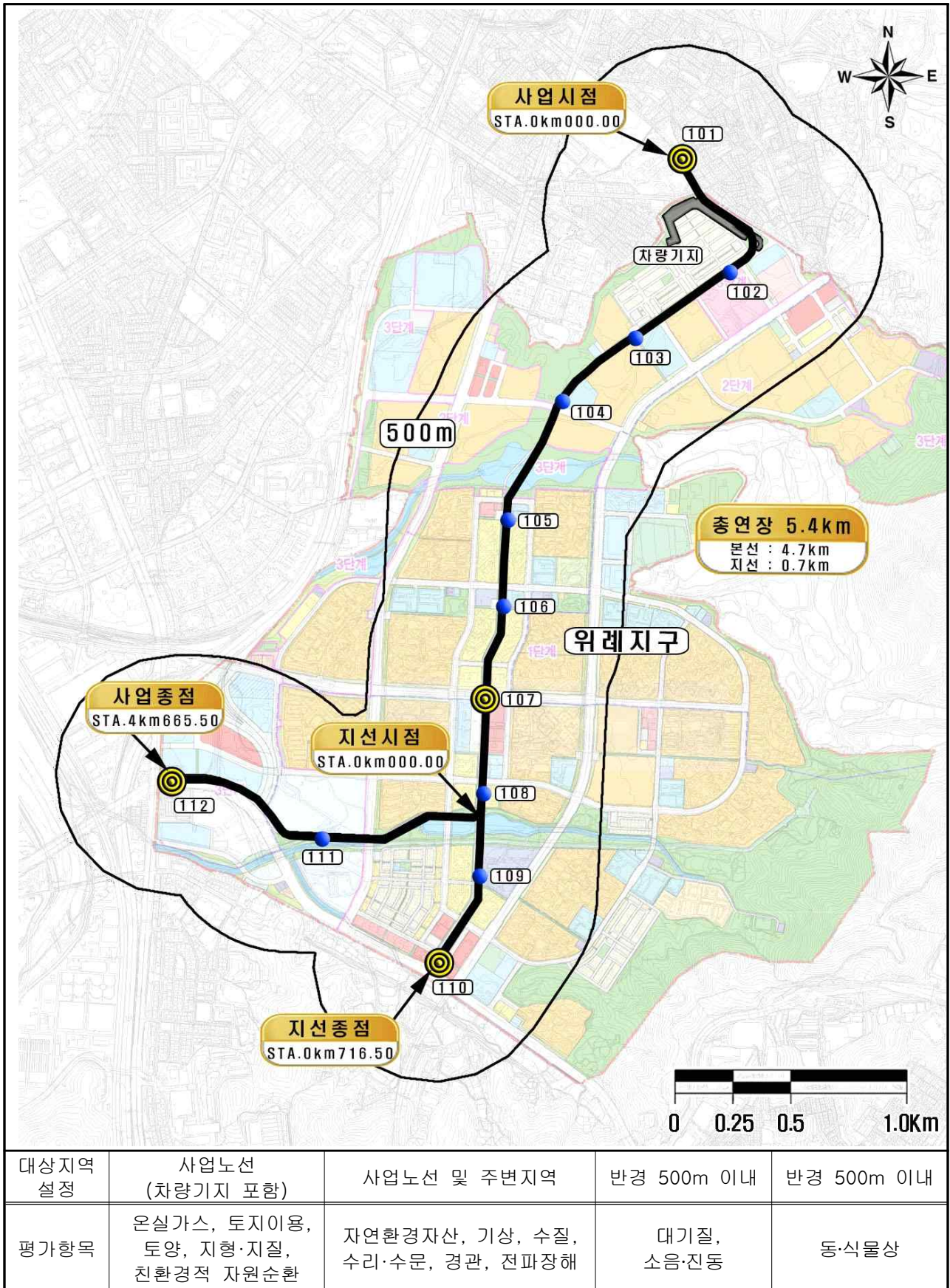
- 본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상의 영향을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항목별 대상지역을 설정하였음

<표 2.2-1> 평가항목별 평가대상지역 및 예측범위

항 목		평가 대상지역 범위		대상지역 설정 사유
		공간적 범위	시간적 범위	
자연 생태 환경	동·식물상	◦ 사업노선 반경 500m	공사시 운영시	◦ 식생변화 및 육상·육수동물 서식환경의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자연환경 자산	◦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	공사시 운영시	◦ 자연환경자산(멸종위기야생동·식물, 습지 보호지역,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에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대 기 환 경	기 상	◦ 주변 기상대 -서울기상대	최근 10년	◦ 대기질 영향예측의 기초자료 활용
	대 기 질	◦ 사업노선 반경 500m	공사시	◦ 공사시 건설장비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발생 및 정온시설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온 실 가 스	◦ 사업노선	공사시 운영시	◦ 공사시 건설장비 가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 운영시 온실가스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표 계속)

항 목		평가 대상지역 범위		평가대상지역 설정 사유
		공간적 범위	시간적 범위	
수 환 경	수 질	◦ 사업노선 주변수계 (창곡천, 장지천 등)	공사시 운영시	◦ 토사유출로 인한 인근 하천에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 시설물(차량기지) 운영시 오수 및 비점 오염원 발생
	수리·수문	◦ 사업노선 주변수계	운영시	◦ 유로 내 교각설치로 인한 수리변화 및 수로단절이 예상되는 지역
토 지 환 경	토 지 이 용	◦ 사업노선	운영시	◦ 토지 편입 및 토지이용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 도시철도 건설로 의한 지역간 단절지역
	토 양	◦ 사업노선	공사시	◦ 장비투입 및 토양오염유발시설 철거시 토양오염이 예상되는 지역
	지형·지질	◦ 사업노선	공사시	◦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 및 주요 생태축 훼손이 예상되는 지역 ◦ 지형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생 활 환 경	친 환경적 자원 순환	◦ 사업노선	공사시 운영시	◦ 공사시 지장물 철거 등 폐기물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 운영시 시설물(차량기지) 운영지역
	소음·진동	◦ 사업노선 반경 500m	공사시 운영시	◦ 공사시 건설장비 가동에 따른 소음·진동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 운영시 도시철도 소음·진동으로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경 관	◦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	운영시	◦ 지형변화 및 구조물(교량), 차량기지 등의 설치로 인한 경관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전 파 장 해	◦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	운영시	◦ 도시철도 운행에 따른 전파장해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그림 2.2-1>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도

2.3 평가항목의 설정

- 사업시행에 따른 평가항목은 사업특성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고 환경영향요소를 공사단계와 운영단계로 구분하여 선정하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에서 제시된 “환경영향평가 등의 분야별 세부 평가 항목”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항목을 설정함.
- 환경평가항목은 자연생태환경 2개 항목, 대기환경 3개 항목, 수환경 2개 항목, 토지환경 3개 항목, 생활환경 4개 항목, 사회·경제환경 1개 항목 등으로 총 15개 항목을 설정하였으며, 항목 선정 및 제외사유는 다음과 같음.

<표 2.3-1> 환경영향평가 항목 선정

구 분	평 가 항 목		
	중점평가항목	일반항목	제외항목
자 연 생 태 환 경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	-
대 기 환 경	대기질	기상, 온실가스	악취
수 환 경	수질, 수리·수문	-	해양환경
토 지 환 경	지형·지질	토지이용, 토양	-
생 활 환 경	소음·진동, 경관	친환경적 자원순환, 전파장해	위락, 일조장해, 위생·공중보건
사 회·경 제 환 경	-	인구·주거	산업
계	8	7	6

<표 2.3-2> 환경영향평가 항목 선정 및 제외사유

구 분	항 목	선정 및 제외 사유
중점평가항목 (8개)	동·식물상	◦ 사업시행으로 인한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의 동·식물상의 서식 변화 검토 ◦ 법정보호종 출현여부 파악 및 보호종 출현시 보호대책수립 등
	자연환경자산	◦ 사업시행으로 인한 자연환경자산 훼손 검토
	대 기 질	◦ 공사시 투입 건설장비로 인한 비산먼지 및 배기가스 발생
	수 질	◦ 인근 수계 수질관련 보전지역 분포현황 파악 및 영향 검토 ◦ 수질오염총량검토 ◦ 공사시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 발생 ◦ 운영시 비점오염물질 발생

(표 계속)

구 분	항 목	선정 및 제외 사유
중점평가항목 (8개)	수리·수문	◦ 사업노선 통과 하천의 구조물(교량) 설치로 인한 수리·수문 변화
	지형·지질	◦ 절·성토 및 지하 굴착 등 지형변화 ◦ 이동토량 발생
	소음·진동	◦ 공사시 건설장비가동에 따른 소음·진동 영향 ◦ 운영시 차량(철도)이동에 따른 소음·진동 영향
	경 관	◦ 보전지역 분포여부(경관보전지역, 국립공원 등) ◦ 지형변화 및 구조물 설치 등으로 인한 경관변화
일반항목 (7개)	기 상	◦ 계획의 특성상 기상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 ◦ 대기질, 수질 등 영향예측 기초자료로 활용
	온실가스	◦ 건설장비 가동에 따른 온실가스 발생
	토지이용	◦ 편입용지의 토지이용 변화 검토 ◦ 주요 구조물 설치계획 검토
	토 양	◦ 지장물 철거, 건설장비 가동 및 발파시 토양오염 우려
	친환경적자원순환	◦ 공사시 생활, 건설, 지정폐기물 발생
	전파장해	◦ 운영시 철도운행에 따른 전파장해 예상
	인구·주거	◦ 지장물 발생 및 지역단절 구간 발생
제외항목 (5개)	악 취	◦ 사업과 관련된 특별한 악취발생원은 없음
	해양환경	◦ 사업시행에 따른 영향이 없음
	위 락	◦ 사업시행에 따른 위락 영향은 미미함
	일조장해	◦ 사업시행에 따른 일조장해 영향이 미미함
	위생·공중보건	◦ 사업시행에 따른 위생·공중보건에 미치는 영향 미미함
	산 업	◦ 사업시행에 따른 영향 미미함

2.4 현황조사 및 예측·평가방법

-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함에 있어 보다 정확하고 타당성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하여 조사·예측·평가 방법을 다음과 같이 선정함

<표 2.4-1> 평가항목별 현황조사·예측·평가 방법

구 분		현황 조사	예측 및 평가방법
자연 생태 환경	동·식물상	① 조사내용 ◦ 식물상 - 식물분포 및 식생, 식생보전등급, 습지분포 등 ◦ 동물상 - 분류군별 종분포 및 서식현황 ◦ 육수생물상 - 인접 수계의 분류군별 종분포 및 서식 현황 ◦ 주요 보호종 현황 ② 조사범위 ◦ 사업노선 및 경계로부터 광역조사 500m, 현지조사 150m~500m(종별 적용) ③ 조사방법 ◦ 현지조사 및 기존(문헌)자료조사 ④ 조사시기 ◦ 계절별 조사(종별 생활사적 특성을 고려하여 분류군별 활동이 왕성한 시기에 현지조사)	◦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전하여야 할 동·식물 분류군별 서식환경을 파악하여 이들 보호대상이 사업시행으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범위를 종합적으로 예측·평가
	자연환경 자산	① 조사내용 ◦ 자연환경자산 분포 현황조사 : 멸종위기야생 동식물, 습지보호구역, 천연기념물 등 관련법에서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거나 국제협약 등에 따라 지정·보호되는 지역 또는 종 조사 ② 조사범위 ◦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기존(문헌)자료조사 및 현지조사	◦ 보호지역 분포시 영향 및 대책수립 ◦ 법정보호종에 대한 영향 및 대책수립
대 기 환 경	기 상	① 조사내용 ◦ 기상자료 분석·정리 ② 조사범위 ◦ 사업노선과 인접한 기상대 ③ 조사방법 ◦ 기상관측자료(통계연보 등) 조사	◦ 기상관측자료(기상연보) 통계 분석 - 서울기상대 ◦ 대기질모델링을 통한 영향예측 시 기초자료로 활용

(표 계속)

구 분		현황 조사	예측 및 평가방법
대 기 환 경	대기질	① 조사내용 ◦ 대기오염 영향대상시설 분포 및 대기질 현황 ② 조사범위 ◦ 사업노선(차량기지 포함) 및 주변지역 반경 약 500m ③ 조사방법 ◦ 현지 및 기존(문헌)자료 조사 ④ 조사지점 및 시기 ◦ 대기질 : 2지점×2회(3일연속, 계절별 조사)	◦ 영향대상 정온시설 및 대기질 현황 등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사업 시행에 따른 대기질 영향 예측 - 대기 확산모델(AERMOD)을 이용한 공사시 PM-10, PM-2.5, NO ₂ 예측 - 저감방안 수립
	온실가스	① 조사내용 ◦ 온실가스 배출원, 에너지 이용시설 현황 ◦ 온실가스 저감관련 법령 및 관련계획 ② 조사범위 ◦ 사업노선(차량기지 포함) ③ 조사방법 ◦ 기존(문헌)자료 조사	◦ 공사시 및 운영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 온실가스 항목 환경영향평가 등 평가지침(2015, 환경부) 참조 ◦ 온실가스 저감목표 설정 및 저감방안 검토
수 환 경	수 질	① 조사내용 ◦ 사업노선 통과 및 주변 수계 수질 현황 - 지표수질, 지하수질 현황 조사 ◦ 수질관련 지역·지구 지정현황 ◦ 수자원 이용현황 및 지하수 이용현황 ◦ 수질관련 환경기초시설 현황 ② 조사범위 ◦ 사업노선 주변수계(창곡천, 장지천 등) ③ 조사방법 ◦ 현지 및 기존(문헌)자료 조사 ④ 조사지점 및 시기 ◦ 지표수질 : 2지점×2회(계절별 조사) ◦ 지하수질 : 2지점×2회(계절별 조사)	◦ 공사시 토사유출에 따른 SS농도 증가로 주변 수계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식을 이용하여 영향 예측·분석 ◦ 공사인부 투입에 의한 오수 발생량 산정(원단위법 이용) ◦ 운영시 차량기지, 정거장 오수발생량 예측 및 오수처리계획 수립 ◦ 운영시 초기강우에 의한 비점오염원 발생 예측 및 대책수립
	수리·수문	① 조사내용 ◦ 하천 및 유역현황 조사 ② 조사범위 ◦ 사업노선 주변수계(창곡천, 장지천 등) ③ 조사방법 ◦ 기존관측 및 통계(문헌)자료 조사	◦ 사업시행에 따른 주변 수계의 수리·수문 변화 검토 - 지하굴착에 따른 지하수위 영향은 사례조사 및 3차원 오염원 이동 분석 지하수 유동모델링 등을 이용하여 수위변화 예측
토 지 환 경	토지이용	① 조사내용 ◦ 용도 및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 지장물 파악 ◦ 주변지역 개발계획 현황 ② 조사범위 ◦ 사업노선(차량기지 포함) ③ 조사방법 ◦ 현지 및 기존(문헌)자료 조사	◦ 사업시행 전·후에 따른 토지이용 변화, 편입용지 파악 ◦ 토지 및 지장물 보상대책 검토 ◦ 지역간 단절구간 발생시 대책수립

(표 계속)

구 분		현황 조사	예측 및 평가방법
토 지 환 경	토 양	① 조사내용 ◦ 토양오염도 현황 ◦ 토양오염우려시설 분포 현황 및 저촉여부 ② 조사범위 ◦ 사업노선(차량기지 포함)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현지 및 기존(문헌)자료 조사 ④ 조사지점 및 시기 ◦ 토양오염도 : 5지점×1회(차량기지 4지점 포함)	◦ 사업시행에 따른 토양오염 영향예측 ◦ 발생폐유 및 지장물 철거로 인한 토양오염 영향 파악 및 대책 수립
	지형·지질	① 조사내용 ◦ 지형형상 및 지질특성 현황 ◦ 백두대간 보호지역 등 보전가지 있는 지형·지질, 특이지형 분포 현황 ② 조사범위 ◦ 사업노선(차량기지 포함)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현지 및 기존(문헌)자료 조사	◦ 깎기·쌓기에 의한 지형변화 파악 및 사면 최소화 대책수립 ◦ 비탈면 보강 및 보호대책 수립 ◦ 특이지형 분포시 보존대책 수립 ◦ 토공량 분석 및 토량처리계획 수립 ◦ 재료원 확보계획 수립
생 활 환 경	친환경적 자원순환	① 조사내용 ◦ 폐기물의 발생량 및 처리현황 ◦ 폐기물 처리시설 현황 ② 조사범위 ◦ 사업노선(차량기지 포함)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기존(문헌)자료 조사	◦ 작업인부로 인한 폐기물 및 분뇨 발생 및 처리방안 ◦ 지장물 철거로 인한 건설폐기물 및 훼손수목의 임목폐기물 발생 ◦ 운영시 차량기지, 정거장 이용객에 의한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방안
	소음·진동	① 조사내용 ◦ 소음현황(환경소음 및 도로소음) ◦ 주요발생 소음원 조사 ◦ 정온시설 분포현황(주거시설, 교육시설 등) ② 조사범위 ◦ 사업노선(차량기지 포함) 및 주변지역 반경 약 500m ③ 조사방법 ◦ 현지 및 기존(문헌)자료 조사 ④ 조사지점 및 시기 ◦ 소음·진동 : 10지점×2회(계절별 조사)	◦ 공사장비로 인한 소음·진동 예측 - 합성소음도 산출이론, 점음원의 거리감쇠이론, 진동파의 거리감쇠공식 등을 적용하여 평가 ◦ 운영시 열차(노면전차)운행에 따른 소음·진동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 - 연구자료 및 실증사례 검토 - 관련 소음예측 프로그램 이용

(표 계속)

구 분		현황 조사	예측 및 평가방법
생 활 환 경	경 관	① 조사내용 ◦ 자연경관영향 심의대상 여부 검토 ◦ 경관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 ◦ 경관 훼손 예상지역 현황 ② 조사범위 ◦ 사업노선(차량기지 포함)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현지 및 기존(문헌)자료 조사	◦ 사업시행으로 인한 경관 훼손정도 및 변화 예측 - 가시권분석 및 경관시뮬레이션을 통한 조망점별 경관변화 예측 ◦ 경관변화 최소화대책 수립
	전파장해	① 조사내용 ◦ 전파장해 및 전자파 개요 등의 현황조사 ② 조사범위 ◦ 사업노선(차량기지 포함)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현지 및 기존(문헌)자료 조사 ④ 조사지점 및 시기 ◦ 전파장해 : 4지점×1회	◦ 철도운행에 따른 전파장해 영향 검토 - 사업계획 및 유사사례를 통한 예측
사회 · 경제 환경	인구·주거	① 조사내용 ◦ 인구·주거 현황 ② 조사범위 ◦ 사업노선(차량기지 포함)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기존(문헌)자료 조사	◦ 통계자료 및 기 조사된 자료 분석

제3장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3.1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3.1.1 결정내용 공개

- 관련 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 공개 내용
 -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결정된 “평가 항목 및 범위” 등을 결정된 날로부터 20일 내에 14일 이상 공개하고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함
- 공개 장소
 - “환경영향평가 해당 “승인기관장” 등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홈페이지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3.1.2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주민의견 검토내용 제시

- 관련 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반영
 - 공개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결과(평가 항목 및 범위 등)”에 관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 주민의견을 검토하여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내용 포함

3.2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 등의 의견 수렴

3.2.1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관계기관 의견수렴

- 관련 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작성한 후 대상사업 사업지역 및 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서울특별시 송파구, 경기도 성남시·하남시), 승인기관(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협의기관(한강유역환경청)로 부터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기간 : 초안이 접수 된 날부터 30일 이내

3.2.2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고·공람

- 관련 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 공고 주체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 공고 시기
 - 초안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
- 공고 신문
 -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간신문 및 대상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
- 공고 내용
 - 사업의 개요
 -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공람 기간 및 장소
 -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의 제출시기 및 방법
- 공고 및 공람내용 게시
 - 서울특별시 송파구, 경기도 성남시·하남시 홈페이지
 - : 공고 및 공람 내용,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문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 : 공고 및 공람 내용, 환경영향평가서(초안)
- 공람 기간
 - 20일 이상 60일 이내(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 공람 장소
 -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각 지자체(서울특별시 송파구, 경기도 성남시·하남시)에 1개소 이상 설치

3.2.3 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가. 설명회

- 관련 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 설명회 개최 주체
 - 사업시행자(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 설명회 시기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기간 내
- 설명회 장소
 -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경우 : 각각의 시·군·구에서 설명회 개최
 ※ 사업시행자가 각각의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한 경우 하나의 시·군·구에서 개최할 수 있음
- 설명회 실시 공고 : 설명회 개최하기 7일전까지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고사항에 포함하여 공고할 수 있음

나. 공청회

- 관련 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
- 공청회 개최
 -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명 이상인 경우
 -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명 이상이고,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 총수의 50% 이상인 경우
 - 사업시행자가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의 공람기간이 끝난 후 관계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개최 공고
 - 공청회를 개최하기 14일 전까지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
- 개최 결과
 - 사업시행자는 공청회가 끝난 후 7일 이내에 개최 결과를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

3.2.4 주민 의견제출 방법

- 관련 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8조
- 의견제출 기한
 - 공람기간 시작일 ~ 공람기간 완료 후 7일 이내
- 제출의견
 -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사업의 수립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 환경보전 방안 및 공청회 개최 요구 등에 대한 의견 제출

3.2.5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 관련 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2조
-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여부를 검토한 결과 본 사업은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지역에 해당되지 않음
-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본 사업노선에 해당되지 않음
 -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은 본 사업노선에 해당되지 않음
 -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주변관리지역은 본 사업노선에 해당되지 않음
 -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은 본 사업노선에 해당되지 않음

3.2.6 주민 등의 의견 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 관련 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 공개 내용
 - 주민 등의 의견 수렴결과와 반영 여부
- 공개 시기
 - 사업계획 확정 이전
- 내용 게시 장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경기도 성남시·하남시 홈페이지 또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홈페이지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 내용 게시 기간
 - 14일 이상 게시

제4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4.1 평가항목·범위 등의 심의결과

4.1.1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개최

- 협의회 의견수렴 개요
 -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음
- 협의 구성 및 운영
 - 일 시: 2021년 08월 31일 ~ 2021년 09월 24일(서면으로 의견 취합)
 - 운영위원: 총 17명(위원장 포함)

<표 4-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구 분		위원 구성	소 속	성 명	비고
1	위원장	승인기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시설운영과	박○○ 과장	
2	위 원	승인기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시설운영과	함○○ 사무관	
3	위 원	협의기관	한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허○○ 주무관	
4	위 원	계획 수립기관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 경전철설계과	박○○ 과장	
5	위 원	민간전문가	(주)한국종합기술	갈○○ 상무	
6	위 원	협의기관 추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 연구위원	
7	위 원	해당 지자체 공무원	송파구청 환경과 기후변화대응팀	오○○ 팀장	
8	위 원	주민대표	송파구 위례동 주민자치회장	최○○ 회장	
9	위 원	주민대표	송파구 마천동 마천1동 통장협의회	조○○ 회장	
10	위 원	주민대표	송파구 거여2동 e편한세상 송파파크센트럴 입주자 대표회	강○○ 회장	
11	위 원	시민단체 추천 민간전문가	송파구 위례동 위례생활권시민회의	김○○ 대표	
12	위 원	해당 지자체 공무원	성남시 환경정책과 자연환경팀	최○○ 팀장	
13	위 원	주민대표	성남 위례지구 입주자대표 협의회	김○○ 회장	
14	위 원	시민단체 추천 민간전문가	성남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 회장	
15	위 원	해당 지자체 공무원	하남시 환경정책과	정○○ 과장	
16	위 원	주민대표	위례엠코타운센트로엘 입주자대표 협의회	손○○ 회장	
17	위 원	시민단체 추천 민간전문가	위례하남대표자연합회	배○○ 회원	

4.1.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서식)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사업)

□ 총괄 의견

- 본 사업은 위례선 도시철도(트램) 건설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20-289호)」 등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반영이 어려운 경우 대안 또는 사유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심의 의견

1.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사업시행시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을 설정하여야 하며, 특히 대기질, 소음 등의 생활환경 항목은 주변 정온시설 분포현황을 고려하여 대상지역을 설정하여야 함
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 환경보전방안은 환경보전목표 및 달성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항목별 환경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는 현실가능한 환경보전방안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3. 평가항목 및 범위 · 방법 등
 - 사업노선이 주변 정온시설 등과 인접하여 위치하는 바, 대기질 및 소음 진동 등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은 중점검토 대상지역으로 설정하여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지역주민들이 공람, 설명회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방안을 강구하고,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여 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하여야 함
5. 약식평가 신청가능 여부
 - 의견 없음
6. 기타(평가준비서 작성내용 및 평가항목 결정시 고려사항 등을 참고)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함

□ 행정사항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 의견 없음

2021. 9. .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위원 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사업)

□ 총괄 의견

- 본 계획노선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역에서 송파구 북정역, 경기도 성남시 우남역을 연결하는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사업(5.4km)으로 아래의 의견을 환경영향평가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에 반영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함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대기질, 소음·진동, 지형·지질 등 환경상의 영향이 예상되는 분야는 사업부지 및 주변의 정온시설 분포현황, 지형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대상지역을 최대한 확대·설정하여야 함
- 사업지구 주변에 운영 및 공사 중이거나 계획이 확정된 개발사업 현황을 조사하고, 누적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 사업주변지역의 정온시설(주거지, 학교 등) 등에 대기, 소음·진동 영향이 예상될 경우 충분한 완충녹지(생태방음벽 등) 확보 등 저감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3.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평가서상의 모든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확정된 내용이어야 하며, 조사방법(지점 선정, 예측 조건, 예측 시 사용된 수치 등)에 대한 산정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모든 조사는 항목별 특성과 계절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고, 조사자의 인적사항 및 근거자료 등을 반드시 수록·제시
- (동·식물상) 법정보호종 등 동·식물 조사는 생육·활동이 왕성한 시기에 생물의 서식 및 이동반경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조사하고, 사업시행에 따른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대기질, 온실가스) 공사 및 운영 시 대기질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강구, 온실가스 배출량, 흡수량 등을 산정하고 다양한 저감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대기질 현지조사는 계절별로 3일 이상 조사를 원칙으로 선정
 - (수질·지하수) 공사 및 운영 시 토사유출, 오수, 비점오염물질 등으로 인한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을 검토·제시하여야 함
 - 토사유출, 오수, 비점오염물질 등으로 인한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제시
 - (소음·진동) 공사 및 운영 시 주변정온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저감방안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 운영 시 계획노선 주변 도로 교통량으로 인한 도로소음의 영향가중 등을 예측하고, 이에 따른 저감방안 제시
 - 현황조사 지점은 공사 및 운영 시 영향예측지점, 사후환경영향조사 지점 등과 연속성을 고려하여 각 항목별 환경을 대표할 수 있는 지점으로 선정하여야 함
 - 사후환경영향조사는 항목별 조사 시기, 조사지점(도면) 등 구체적으로 제시
 - 영향예측 및 결과는 저감방안 강구 전·후를 비교할 수 있도록 제시
 - 저감방안은 가능한 둘 이상의 대안을 비교하여 그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기술하여야 하며, 최종적으로 사업 시행 시 이행할 저감방안을 선정하되 그 선정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
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 주민들이 공람 및 설명회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동 사업에 따른 환경적인 영향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이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평가서에 반영하여야 함
5. 기타(평가준비서 작성내용 및 평가항목 결정시 고려사항 등을 참고)
-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상기 제시된 심의의견의 반영여부를 제시하고, 반영이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2021. 9. 9.

한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심의위원 허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서식)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사업)

□ 총 관 의 건

- 사업노선이 공동주택, 상가 등을 통과하므로 공사·운영시 소음·진동으로 인한 민원 발생이 예상되므로 철저한 저감대책 수립이 필요하며, 본 의견과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20-289호)」 등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함

□ 심 의 의 건

1.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최대한 포함하고, 평가항목별 영향권 범위 설정 근거와 사유를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 사업대상지역의 공동주택 등 민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시 및 운영시 발생되는 비산먼지 및 소음·진동 등 환경피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수립해야 하며, 창곡천, 장지천 등 하천횡단 교량 설치시 부유사 확산 등 수질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야 함

3. 평가항목 및 범위·방법 등

- 동·식물상 현장조사는 활동이 가장 왕성한 시기에 시행하고, 소음·진동에 대한 평가대상지역 범위는 주변 정온시설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함

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평가 대상지역 주민과 이해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충분한 의견수렴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제시된 의견은 검토후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하여야 함

5. 약식평가 신청가능 여부

- 의견 없음

6. 기타(평가준비서 작성내용 및 평가항목 결정시 고려사항 등을 참고)

- 문헌자료 활용시 대상지역과 관련성 있는 최근자료를 활용하고, 출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 행 정 사 항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 의견 없음

2021. 9. 6.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위원 박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 총괄 의견

- 본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경우 기 조성완료된 위례신도시 구간을 지상 통과하는 사업으로, 공사시 선로 주변 주거지, 상업시설, 민감시설에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되어 다음의 심의의견을 고려하여 내실있는 평가가 이뤄져야 함.

□ 심의의견

1.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계획노선의 경우 대부분 구간이 지상고와 유사한 수준으로 조성될 계획인 바, 운영시 정거장 도착, 출발시 속도 감소, 도심구간 건물 등에 의한 저감효과 등을 고려할 시 500m보다는 좁은 범위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는 바, 유사시설 소음도 및 진동레벨 자료 등을 참고하여 현실적인 영향권을 검토하여 소음진동 영향을 예측, 평가하여야 함.

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 의견없음

3. 평가항목 및 범위 · 방법 등

- 선로구역 대비 차량기지 구역의 공사규모가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되는 바, 공사시 차량기지 주변에 대한 면밀한 평가가 필요함.
- 곡선구간 통과시 직선구간과 달리 스립소음 등 레일에서 특이소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토양 현황조사의 경우 차량기지 내를 포함하고, 선로구간내 토지이용 특성을 고려하여 조사지점을 선정하여야 함.
- 본 도시철도의 경우 배터리를 이용하는 무가선 노선으로 별도의 고압선로, 송배전시설이 계획되지 않아 운행구간내 전파장해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차량기지내 배터리 충전설비, 변전소 등이 설치될 경우 해당 지역 주변에 한해 조사, 예측평가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함.

- 지하수질의 경우 전 구간이 도심지내로 대부분 상수도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계획노선 좌우 500m 이내 지역내 지하수 이용시설 분포여부를 확인하여 필요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의견없음

5. 기타(평가준비서 작성내용 및 평가항목 결정시 고려사항 등을 참고)

- 지하 차량기지의 환기구는 급기형식과 배기형식이 각 1개소씩 계획되어 있으나 세부 위치는 확인이 되지 않는 바,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환기구 위치선정 및 영향을 검토가 필요함.

2021. 9. 9.

심의위원 갈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사업)

□ 총 란 의 건

- 본 건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역과 북정역 및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우남역을 연결하는 위례선 도시철도(연장 5.4km) 건설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 대한 심의의견임

□ 심 의 의 건

1.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의견없음

2. 환경보전방안의 대한

- 의견없음

3. 평가항목 및 범위·방법 등

- 의견없음

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의견없음

5. 약식평가 신청가능 여부

- 의견없음

6. 기타(평가준비서 작성내용 및 평가항목 결정시 고려사항 등을 참고)

- 차량기지 설치 및 운영에 따른 환경적 영향(대기질, 수질, 친환경적 자원순환 등) 예측 및 대책 마련
- 계획노선이 통과하는 하천구역 등을 대상으로 사업 시행으로 인한 수질 및 수생태계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계획노선 주변의 타 교통시설 등을 고려한 소음진동 누적평가 및 대책 마련
- 계획노선의 지하차도구간을 대상으로 공사 시 및 운영 시 지하수 유출에 따른 환경적 영향(지하수위 저하, 지반침하 등) 예측 및 대책 검토
- 계획노선 및 정거장 등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경관적 영향 검토 및 대책 마련

2021. 9. 8.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위원 선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사업)

□ 총 관 의 건

- 차량기지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 구간이 공동주택단지를 통과하고 있으며 일 19.5시간 운행으로 하절기에는 폐도 주변 주택가에서 소음·진동으로 인한 민원이 예상됨
- 107정거장(트랜짓물)은 위례신사선 시점으로 지상 및 지하에서 공사가 동시에 시작되는 일이 없도록 공사시기 사전 조율 필요

□ 심 의 의 건

1.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마천역(5호선)부터 북정역(8호선·분당선) 구간의 본선 및 우남역(지선) 구간 일원을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설정은 적정함.
- 위례~신사선 도시철도가 '22년부터 시작되어 '27년 준공예정으로 본 사업기간과 중첩될 것으로 보여 교통정체 요인을 살펴보아야 할 것임.

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 소음·진동에 대해 계획노선 반경 500m이내를 영향권으로 한정하였으나 송파구 지역기준 324천여명이 거주하고 있어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세심한 대응이 필요함.
- 장지천교(본선) 및 창곡천교(지선) 트램차량 교행 시 지상구간보다 소음·진동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됨
- 주택가와 인접한 차량기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및 세차폐수 처리에 대한 대책 요구됨.

3. 평가항목 및 범위 · 방법 등

- 무가선 트램차량 임에도 전파장해 조사는 지역주민 신뢰도 향상을 위해 바람직함
- 소음·진동을 계절별 조사보다는 하절기, 동절기에 집중 조사하는 것으로 검토하되 공사장 비로 인한 부문과, 열차운행에 따른 부문을 각각 구분하여 영향여측 및 저감방안 수립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 1.~ 3.31.) 및 비상저감조치 시에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공사장 공사시간 단축·조정을 적극 도입 고려하고 저소음·저진동공법 가이드라인 준수요망

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주민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이로 인한 민원발생 여지 차단

5. 약식평가 신청가능 여부

해당없음

6. 기타(평가준비서 작성내용 및 평가항목 결정시 고려사항 등을 참고)

- 지상구간을 운행하는 무가선 트램이라는 특징에 대해 주민이해도 제고

□ 행 정 사 항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 해당없음

2021. 9. 9.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위원 오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서식)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사업)

□ 총 관 의 건

- 평가항목·범위결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각 항목별 검토의견 및 문제점을 토대로 작성
 - 친환경적인 위례선 운영을 위한 소음, 진동, 수질 등의 환경 영향 최소화
 - 보행자와 공존할 수 있는 안전 대책 등 마련

□ 심 의 의 건

1.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의 적정성
 - 차량기지, 정거장 시설 및 부속시설과 건설자재 등의 공사 필요 공간

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 입지 및 환경영향을 고려한 지감방안과 피적 대안에 대한 의견 기술
 - 별도의견 없음

3. 평가항목 및 범위·방법 등

- 환경영향평가서에 포함되어져야 할 평가항목 및 평가범위
 - 소음, 진동, 수질, 악취, 보행 환경(생활불편), 빛공해, 경관 등
- 환경영향평가항목별 조사(조사 횟수, 시기, 방법 등)·예측·평가방법의 적정성에 대하여 의견을 기술
 - 빛공해, 악취, 보행 환경(생활불편) 추가

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 의견수렴절차를 생략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포함
- 전자공청회, 주민설명회

5. 약식평가 신청가능 여부

- ※ 약식평가신청의 경우에 한하여 작성
- 신청하지 않음

6. 기타(평가준비서 작성내용 및 평가항목 결정시 고려사항 등을 참고)

- 기타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추가의견 기술
 - 위례선 건설로 인해 환경에 대한 부정적 요인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 환경보전을 위한 점진적 대책 마련

□ 행 정 사 항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 위례선 신축 추진을 위한 각 부처간 협력과 노력

2021. . . .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위원 회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서식)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사업)

□ 총 관 의 견

- 평가항목·범위결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각 항목별 검토의견 및 문제점을 토대로 작성

1. 위례선 준영시 반영도를 소음·진동에 대한 대책사항.
2. 위례선도시철도 준영시 주변상가(아현역거점) 정수처리장 기대감.

□ 심 의 의 견

1.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의 적정성

적정

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 입지 및 환경영향을 고려한 저감방안과 저지 대안에 대한 의견 기술

적정

3. 평가항목 및 범위·방법 등

- 환경영향평가서에 포함되어져야 할 평가항목 및 평가범위

적정

- 환경영향평가항목별 조사(조사 횟수, 시기, 방법 등)·예측·평가방법의 적정성에 대하여 의견을 기술

적정

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 의견수렴절차를 생략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포함

적정

5. 약식평가 신청가능 여부

- ※ 약식평가신청의 경우에 한하여 작성

이해당

6. 기타(평가준거서 작성내용 및 평가항목 결정시 고려사항 등을 참고)

- 기타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추가의견 기술

적정

□ 행 정 사 함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

2021. 9. 17.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위원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사업)

□ 총괄 의견

-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목적이 위례신도시의 교통난 해소 및 대중교통 편의성 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다보니 이로 인하여 기점역인 마천역 주변의 교통 증체 및 대규모 이용객 유입으로 인한 연계 교통의 부족에 대한 대비책이 절실히 필요함

□ 심 의 의 건

1.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대상지역의 설정 범위는 적절하다고 생각함.

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저감방안에 대해 언급이 없음

3. 평가항목 및 범위 · 방법 등

- 생활환경 항목에 교통환경 평가 항목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계획 노선을 따라 차량 통행량 및 예상 이용객 수 확인 필요

- 차량 기지로 인한 소음 및 먼지 발생에 대한 대응책 필요

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5. 약식평가 신청가능 여부

6. 기타(평가준비서 작성내용 및 평가항목 결정시 고려사항 등을 참고)

- 차량 운행시에 발생하는 소음, 공해 등의 환경 영향 평가 기준 및 차량 기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 기준 등이 명확히 제시되기 바람.

2021. 9. 7.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위원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사업)

□ 총 관 의 건

- 평가항목·범위결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각 항목별 검토의견 및 문제점을 토대로 작성
 - 사업시행으로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여 친환경적인 위례선 도시철도건설
 - 노선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시설물인 차량기지(15,700m²)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방법 결정필요

□ 심 의 의 건

1.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대상지역 설정의 적정성

- 토지환경의 토지이용,토양,지형,지질 항목의 공간적 범위를 차량기지, 정거장 시설등을 고려하여 차량기지 및 정거장 부지 및 공사에 필요한 범위 추가
- 생활환경의 친환경적 자원순환의 공간적 범위 또한 계획노선과 함께 차량기지를 포함 하는 범위 설정 필요

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 입지 및 환경영향을 고려한 저감방안과 최적 대안에 대한 의견 기술

-별도의견 없음

3. 평가항목 및 범위 방법 등

- 환경영향평가서에 포함 되어져야 할 평가항목 및 평가범위

- 수리·수문 계획노선의 배수처리에 따른 주변 배수처리 변화 및 영향
- 수질 : 차량기지 폐수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영향 검토
- 악취 : 차량기지 운영으로 인한 악취발생 영향 검토 필요
- 경관 : 위례동 주위 미관을 고려한 경관 반영

(차량과 트레일러, 트레일러 기준 구조물 경관 상 존재 여부 검토, 창지천 유민령 교차부 단차 문제, 차량기지 지상부 낮춤 계획 반영)

- 소음, 진동 : 드림공사 시, 운영 시 최소화 방안 대책 마련 필요(방진패드 등)
- 인구, 주거 : 공사 중, 운영중 지장물 발생 및 지역단절 구간 대책 (학생 안전 통학로, 상가 입출입구간등 생활 불편 해소 방안)

- 환경영향평가항목별 조사(조사 횟수, 시기, 방법 등)·예측·평가방법의 적정성에 대하여 의견을 기술

- 토지환경(토양) 조사범위를 차량기지 부지 포함하여 시행
- 토양오염도 조사지점을 차량기지(과거 군부대) 변적을 고려 4지점 이상 선정 필요
- 악취 부분 조사·예측 평가방법 추가 필요

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계획 반영
- 코로나19 사회적 상황을 고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에 따른 전자공청회 시행방안 추가 필요

- 환경영향평가항목별 조사(조사 횟수, 시기, 방법 등)·예측·평가방법의 적정성에 대하여 의견을 기술

- 대기환경 기상 : 계획노선 인근 서울기상대의 최근 10년간 기상자료 분석
- 생활환경 친환경적 자원순환 : 공사 시 투입장비로 인한 폐유 발생량 예측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예정

6. 약식평가 신청가능 여부

- 계획노선 연장이 5.4km로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최소규모(연장 4km)의 135%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최소 규모의 200퍼센트이하인 사업으로서 약식절차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되나 약식절차 신청하지 않음

7. 기타(평가준비서 작성내용 및 평가항목 결정시 고려사항 등을 참고)

- 비산먼지, 소음 진동등 환경에대한 부정적인 요인발생이 예상되므로 환경저해 항목별 저감방안과 환경보전 계획수립 필요

□ 행정 사항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인 위례선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 신속 추진 건의

2021. 9. .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위원 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사업)

□ 총 관 의 건

-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업 시행과 운영에 따른 비산먼지, 소음, 진동, 수질, 대기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함

□ 심 의 의 건

1.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계획 또는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하되, 환경영향이 미치는 지역의 범위는 계획 또는 사업지역 및 그 주변 지역에 개발 중에 있거나 계획이 확정된 사업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야 하므로, 사업구간 내 향후 개발계획 검토 필요

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 의견없음

3. 평가항목 및 범위 · 방법 등

-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국토종합계획·수도권정비계획 등 상위계획 반영
- 평가항목별 대상지역의 설정 수정
 - 평가항목 별 직접영향권과 간접영향권 구분하여 평가대상 범위 검토
 - 자연생태환경(동식물상): 조사범위를 0.5km를 동일하여 직접적인 서식지 훼손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에 따른 동·식물상 영향발생 예상지역으로 검토 필요
 - 수환경(수질): 창곡천 구조물(교량) 설치로 인한 하상변화 등 감안 조사지점 확대
 - 생활환경(소음진동): 직접/간접영향권을 부지경계 0.3km, 0.5km 이내로 구분 검토
-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과 운영에 따른 주변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제시
- 대기질, 소음진동, 악취 등의 계절별 조사와 특히, 소음·진동의 영향은 야간 및 심야시간대 예측에 유의하여 작성

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소음진동 등 인근 지역 주민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으로 분야별 구체적인 저감방안이 필요함

5. 약식평가 신청가능 여부

- ※ 약식평가신청의 경우에 한하여 작성

6. 기타(평가준비서 작성내용 및 평가항목 결정시 고려사항 등을 참고)

- 목표생태면적률(개발사업유형별 달성목표 고려) 설정(생태면적률 적용지침, 환경부 2016.7.1.)하고 환경현황 조사시 가장 최근의 자료를 인용하기 바람

2021. 9. 9.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위원 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서식)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사업)

□ 총 관 의 건

- 평가항목·범위결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각 항목별 검토의견 및 문제점을 토대로 작성

□ 심 의 의 건

1.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의 적정성

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 입지 및 환경영향을 고려한 저감방안과 최적 대안에 대한 의견 기술

3. 평가항목 및 범위·방법 등

①. 창곡천-남위례역(108~110) 구간 복선 설치.

- 창곡천 교량: 복선로와 보행로 고려한 교량폭 적용.
- 복정지구, 산성역 재개발 인구 유입 고려하여 108~110역 구간 복선로 설치.

②. 110번역과 8호선 남위례역 연결보행로 입구 간 환승 이용객 이동 동선 최소화.

③. 주거시설 인접 구간 소음·진동 최소화 및 보행자 교차 구간에서 보행자 안전 고려하여, 해당 구간 운행 속도를 30km/h이하로 운행.

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 의견수렴절차를 생략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포함

5. 약식평가 신청가능 여부

- ※ 약식평가신청의 경우에 한하여 작성

6. 기타(평가준비서 작성내용 및 평가항목 결정시 고려사항 등을 참고)

- 기타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추가의견 기술

□ 행 정 사 항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2021. 9. 7.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위원 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서식)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사업)

□ 총 관 의 건

- 평가항목·범위결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각 항목별 검토의견 및 문제점을 토대로 작성
 - 위례선 도시철도는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신속한 건설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며, 다만 최근 친환경적이고 스마트한 미래 지향적인 교통 시스템 등이 발전하고 있기에 보다 탄소중립적인 방향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 (무가선 라인이프로 자동차도 다닐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연구 적용된다면 도로교통 상황에 따른 단리적 운영 가능해 시민 이동 편의성 개선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사료됨. 유럽의 나라들과 북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친환경 이동 인프라 확대를 위한 방안 검토 및 적용도 이루어졌으면 함. 예를 들면 스마트모빌리티 이동 및 자전거 이동 도로와 비세먼지 흡수원인 녹지 조성 절목 등의 추진도 다양하게 검토되었으면 함
 - 전기 트램에서 수소 트램으로의 전환 및 적용이 검토되어도 좋을 시점이라 사료되어, 이 부분에 대한 사례 연구 및 전문가 타당성 평가·검토 등이 병행되었으면 함

□ 심 의 의 건

1.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의 적정성
 - 법적인 지역 설정에 문제는 없으나 장기전과 창곡원은 위례신도시의 중요 하천이기에 도시철도 환경영향평가에서 특히 중요히 다뤄야 할 것이란 의견임. 하천이 갖는 생태학적 의미와 환경가치 등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여지는 바 집중한 접근과 검토가 병행될 것 마함

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 입지 및 환경영향을 고려한 저감방안과 최적 대안에 대한 의견 기술
 - 특이사항 없음

3. 평가항목 및 범위·방법 등

- 환경영향평가서에 포함되어져야 할 평가항목 및 평가범위
 - 공사 시 및 운영 시 우.오수 및 지하유출수에 대한 철저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 대기보존 특별대책지역이나 대기환경 규제지역은 아니나 인구 밀집지역으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전자파 등 위해요소별 측정지 예측에 따른 안전장치 설치 및 효율성 제고 방안 등이 함께 평가되었으면 함

○ 환경영향평가항목별 조사(조사 횟수, 시기, 방법 등)·예측·평가방법의 적정성에 대하여 의견을 기술

- 위례 신도시 개발 당시 멸종위기 2급인 땃공이를 대체 서식지로 이전한 바 혹은 주변에 현재도 서식하고 있는 개체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도 함께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관련 법령에 근거한 주민 설명회 및 공청회는 실시하되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하게 될 경우 지역 내 역량 있는 시민단체(소비자단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환경활동단체 등) 실무 대표자들의 의견 청취 간담회 개최 통해 유의미한 의견 수렴이 가능할 거라고 사료됨, 다만 형식적인 절차로 운영되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 간담회는 최소 3회 이상 가질 필요 있음
- 대면 주민 설명회 및 공청회 실시가 불가한 경우 온라인 설명회 개최라도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미리 참여자 신청을 구글폼으로 받아 줌 방식의 이해관계자 토론과 유튜브 방식의 불특정 다수의 의견 청취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듯함

5. 약식평가 신청가능 여부

※ 해당없음

6. 기타(평가준비서 작성내용 및 평가항목 결정시 고려사항 등을 참고)

○ 기타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추가의견 기술

- 위례지구의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장지천과 창곡천의 갈수기 수위 유지 등을 위해 지하 침출수 활용방안 등을 함께 고려해 보면 좋겠다는 의견임

□ 행 정 사 항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

2021. 9. 10.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위원 이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사업)

□ 심 의 의 건

1.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대상지역 선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 의견없음

3. 평가항목 및 범위 · 방법 등

- 평가항목 추가 검토 1 : 빛공해분야

- 하남시는 '19.7.19일부터 경기도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광고조명 또는 장식조명을 설치할 경우 인근 주민에게 조명으로 인한 빛공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빛공해 방지를 위한 장식조명 설치,관리 권고기준(환경부고시 제2018-176호)」, 「빛공해 방지를 위한 광고조명 설치,관리 권고기준(환경부고시 제2017-263호)」을 준수하여야 하며,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1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함
- 사업시행으로 공간조명(가로등), 광고조명 등 설치로 인해 주민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시 이에 대한 대책 및 저감방안 필요

- 평가항목 추가 검토 2 : 인근 주민 소음,진동, 미세먼지 대책이 철저히 강구되어야 하며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방안 수립 (지상이며 도심속으로 운행하기 때문)

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의견수렴계획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5. 약식평가 신청가능 여부 : 해당없음

2021. 9. .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위원 정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서식)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사업)

□ 총 관 의 건

- 평가항목·범위결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각 항목별 검토의견 및 문제점을 토대로 작성 의견없음

□ 심 의 의 건

1.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의 적정성
의견없음

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 입지 및 환경영향을 고려한 저감방안과 최적 대안에 대한 의견 기술
의견없음

3. 평가항목 및 범위·방법 등

- 환경영향평가서에 포함되어져야 할 평가항목 및 평가범위

- 환경영향평가항목별 조사(조사 횟수, 시기, 방법 등)·예측·평가방법의 적정성에 대하여
의견을 기술

의견없음

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 의견수렴절차를 생략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포함

의견없음

5. 약식평가 신청가능 여부

- ※ 약식평가신청의 경우에 한하여 작성

의견없음

6. 기타(평가준비서 작성내용 및 평가항목 결정시 고려사항 등을 참고)

- 기타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추가의견 기술

의견없음

□ 행 정 사 항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 첨부파일

2021. 9. 12.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위원 손

[‘21년 위례선 민원 쟁점별 내용]

구분	위례선 민원 쟁점	비고
1	<u>착공식 ‘21년 12월내 시행 관련 -> 년내 착공식 추진 관련</u> - 우선 시급 공사분(차량기지, 교량) 관련 착공식 년내 실시 요구관련 상용하는 대체방안에 대하여 구체적 협의 후 의견 제출건의 - 착공식 관련 계획 시 구체적 홍보 계획 안) 수립하여 홍보 추진 건의 (단순 보도자료외 방송등 적극적인 홍보 방안 수립 건의. 트램 부활! 서울시 대중교통의 혁신 패러다임...)	
2	<u>‘24년 내 개통 시행 관련 (‘25. 9. 일의 발표) -> 사업지연 관련 개통 단축 관련</u> - 위례주민 개통 일정 부동의에 따른 기간 단축 관련을 위하여 실시실제 적격자 선정 후 구체적 제 협의 추진	
3	<u>트램, 차량 발주 관련 -> 차량 구매 시 사업비 증액포함 적극 행정 요청</u> - 서울시는 현재 국내 오투도신(원도기술연구원) 채택 차량과 동일한 R&D 검증단계에 있는 제품의 사양을 채택하고 있는 바, 무가선 방식으로 검증된 기타 방식 제품 채택여부를 포함하여 검토할 것을 요청함. (위례신도시 트램은 위례신도시 성패를 가늠하는 것이므로 필히 운영과정에 제품 결합 발생 되지 않아야 함.) - 차량 출속 구매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 건의 - 통사업비 증액이 되더라도 사업비 안정적 확보 및 차량 구매관련 사업 지연(최소화) 방지 방안	
4	<u>위례선-위례신사선 제 인허가 행정 기간 단축 매뉴얼 보완 필요 -> 행정 소요기간 단축을 위한 특별 대책 수립</u> - 기존 일정은 최소 행정 소요기간을 고려한 것으로서 이행을 위한 시기별 철저한 업무 대응 구축 필요 (위례선, 위례신사선) - 서울시 타 일반 철도 사업과 달리 위례선/위례신사선은 3기신도시 추진에 따라 2기신도시 교통대책 장기 지연사업에 행정 절차 단축 추진 계획을 국토부에서 밝힌 바 있음. -> 위례광역교통개선대책사업으로서 국토부 행정 절차 패스트 트랙 약속 이행을 고려하여 서울시의 신속 추진 체계 구축 촉구 - 단순 업무별 대응을 하는 현재 방식은 통상의 기간 및 지연사정을 모두 반영하게 하므로 사업 지연은 불가피 할 것 이므로 즉시 중앙정부 및 서울시 행정절차 중 기간단축을 위한 업무 계획 수립 (국토부 부동산 정책과의 위례선, 위례신사선 행정절차 기간 단축 협조 시 역할 요구 - 대광위, 환경부, 기타 국토부 협의 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서식)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사업)

□ 총괄 의견

- 평가항목·범위결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각 항목별 검토의견 및 문제점을 토대로 작성
 - 사업시행으로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 영향을 최소화가 우선되어야 함

□ 심의 의견

1.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대상지역 설정의 적정성

- 차량기지를 포함하는 중점적 범위 설정 필요

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 입지 및 환경영향을 고려한 저감방안과 최적 대안에 대한 의견 기술
 - 별도 의견 없음

3. 평가항목 및 범위·방법 등

- 환경영향평가서에 포함 되어져야 할 평가항목 및 평가범위
 - 공사단계에서의 환경오염 최소화 방법을 최소화 하여야 함
 - 낙뢰에 대한 접지부분에 대한 평가항목이 추가되었으면 함
 - 내진 성능에 대한 평가항목도 추가되었으면 함
- 환경영향평가항목별 조사(조사 횟수, 시기, 방법 등)·예측·평가방법의 적정성에 대하여 의견을 기술
 - 토지환경(토양) 조사범위를 차량기지 부지 포함하여 시행
 - 지진가능성에 대한 조사·예측 평가방법 추가 필요

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계획 반영
- 코로나19 사회적 상황을 고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에 따른 전자공청회 시행방안 추가 필요
- 환경영향평가항목별 조사(조사 횟수, 시기, 방법 등)·예측·평가방법의 적정성에 대하여 의견을 기술

특별한 의견사항이 없음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예정

6. 약식평가 신청가능 여부

- 계획노선 연장이 5.4km로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최소규모(연장 4km)의 135%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최소 규모의 200퍼센트이하인 사업으로서 약식절차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되나 약식절차 신청하지 않음

7. 기타(평가준비서 작성내용 및 평가항목 결정시 고려사항 등을 참고)

☐ 행정사항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

2021. 9 . .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위원 배